

수 사 에 협 력 요 청

형사절차상 필요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부담을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을 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 정 청 취

담당 조사원이 범행상황이나 범인에 대해서 자세한 사정을 묻습니다.
떠올리고 싶지않고 말하고 싶지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만, 범인이나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기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록 수사가 원활해지고 범인의 조기검거에 연관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증 거 품 의 제 출

범인이나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피해를 당한 분이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 소지품등을 증거품으로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하므로 부디 협력 부탁드립니다.

현 장 검 사 등 에

범죄의 현장을 확인할 때 참석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현장검사」라하며, 특히 범인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만 사실을 확실히 해서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 판 에 서 의 증 언

범죄 입증을 위해서 공판에서 증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인질문」이라고 합니다)

피 해 자 가 이 용 가 능 한 제 도

*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가족, 유족분들을 「피해자등」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이용가능한 제도》

지정피해자 지원 요원 제도

살인, 강간, 상해등의 신체법, 뺑소니 사건, 교통사망사고등의 피해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등의 분들에게

- 병원의 준비, 동행
- 현장검사의 동행
- 자택에 교통수단 제공
- 불안한 사항에 대한 상담
-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전문상담원등의 소개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 해 자 연 락 제 도

살인, 강간, 상해등의 신체법, 뺑소니 사건, 교통사망사고등의 피해자등의 분들에게

- 형사수속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 피의자의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상황
- 체포후 구류가 행해진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기소·불기소등의 처분결과
- 공소를 제기한 법원등을 연락 드립니다.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않은 분이나 연락이 불필요한 분은 조사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 피의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연락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 피 해 방 지 및 보 호 대 책

피해자등의 분들이 또다시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법지도 및 경계조치, 가해자의 석방등의 정보제공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등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미연방지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이나, 아동학대, 스토키 사안등의 피해를 당한 분이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 확보에 대해서 부인상담소나 아동상담소와 연계하여 대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조사원이나 부인상담소, 아동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범 죄 피 해 급 부 제 도

범죄행위에 의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나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분에게 나라가 일시금으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부금의 종류는

- 유족급부금 (유족분에게 지급)
- 중상병급부금 (1개월 이상의 치료 및 3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상병 또는 1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3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등의 피해를 입어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한 분에게 지급)

● 장애급부금 (장애를 입은 피해자분에게 지급)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에히메경찰본부 경무과 범죄피해자 지원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정 신 적 피 해 에 대 한 지 원

범죄의 피해에 의해 상당히 무거운 스트레스를 안게 되면,

- 강한 공포·불안을 느끼고 잠을 못잠
- 집중을 할 수 없고 사건의 장면이 떠오른다
- 음주·흡연이 늘었다
- 두통이나 어깨결림, 호흡 곤란을 느낌 등의 심신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등의 상담원과 연계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본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경찰 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검 찰 청 피 해 자 지 원 요 원 제 도

검찰청에서도 피해자등의 분들의 다양한 상담에 대응, 법정까지의 안내·동행, 사건기록의 관람이나 관계기관이나 단체등의 소개등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검찰청 또는 사건담당 검찰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피 해 자 등 통 지 제 도 (검 찰 청 등)

검찰청, 지방경생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등의 분들에게 요청이 있을 시 사건의 처분 결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소, 재판의 결과, 범인의 신병상황, 형무소에서의 출소에 관한 상황등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검찰관 등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심 신 소 실 자 에 의 해 피 해 를 입 은 분 의 심 리 방 청 및 결 과 통 지

살인·방화등의 중대한 범죄를 행한자가 심신소실등으로 불기소 또는 무죄가 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이 의료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심리를 구하여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피해자등은 요청을 하실 경우 심리를 방청할 수 있고, 심리결과등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검 찰 심 사 회 에 심 사 신 청

검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심사회는 피해자등으로부터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검찰심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재 판 에 서 이 용 할 수 있 는 제 도

피해자등의 분들은 범죄의 입증을 위해 증인으로서 공판에서 증언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판에서는 법원에의 동행, 피해자분과 피고인, 방청인과의 사이를 차단하고 비디오모니터등을 통한 증언등이 인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사건기록의 관람, 복사, 공판을 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 재판에의 참가, 국선번호 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를, 피해자등의 분을 배려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민 사 상 의 손 해 배 상 청 구 제 도

범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등에 대해 재산적손해나 정신적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수속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형사수속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청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법 테라스 또는 변호사등의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